

2014년도
도화2·3동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 남구
(감사관실)

2014년도 도화23동 종합감사 실시결과(요약)

I 감 사 개 요

1. 감사범위

가. 수감기관 : 도화2·3동 주민센터

나. 감사범위 : 종합감사 [2012. 3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업무 전반]

2. 감사기간 : 2014. 3. 25 ~ 3. 27 (3일간)

3.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3명

4. 중점 감사사항

가.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나.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 여부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라. 각종업무(서무,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추진실태 등

II 처 분 요 구

1. 총 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건/명)	현지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지급 (환급)	추징 (징수)	기타			
12	4	8	1/64	1/64	-	-	-	1명	-	

Ⅲ 주 요 지 적 사 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범위 중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강사는 동장에게 강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강사는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강사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고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동장은 자치센터와 위원회가 사용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장비·물품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도화2·3동에서는 2012.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강료 지출 전 동장과 사전협의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2012년 11월 주민자치위원회 단합대회 버스임차 1건 1,449,200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했다고 하나 동 사업이 위원회가 주관으로 시행한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은 지출을 하였고, 서예 등 4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채용에 있어 주민만족도 평가를 거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자치센터와 위원회가 사용중인 시설과 물품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장비·물품관리대장을 미비치해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강사채용 등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도록 “주의” 촉구

◆ 전입신고 사후 확인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도화2·3동에서는 2013. 12월, 2014년 1월중 전입신고 299건 중 사후확인서 통장 송부지연 40건, 통장 사후확인일 초과 59건, 통장 확인일 불명 13건, 담당공무원 사후확인서 확인누락 4건, 전입사후 미확인 13건 등 전입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처분요구 : 전입 신고자에 대하여 전입사후확인서를 15일 이내에 통장에게 송부하시고 15일 이내에 통장으로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서를 징구하여 전입여부를 확인하시고 담당자 날인 후 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치하는 등 전입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 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 도화2·3동에서는 2013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면서 동 예산의 집행 시에는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한해 매식비 지급단가 기준에 맞게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동 주민센터 직원 등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관련기준에 의거 민간인에게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을 참석 민간인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식사비로 집행한 사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잘못 집행된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비 부분을 제외한 64,000원은 회수 조치

◆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한 세출예산의 집행 시에는 동 규칙 별표에서 정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남구 발행 회계실무편람에 의하면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서류임. 또한 지출결의서의 작성란 중 원인행위부 기재 전에 작성되는 발의란에는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발의일자는 삭제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

☞ 도화2·3동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각종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기본이 되는 지출결의서의 작성 시 각각의 해당 목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 기간 총 70건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집행품의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는 발의란에 근거없는 날짜를 기록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회계집행의 기본이 되는 지출결의서는 오류가 없도록 각종 계약 등 지출 시 기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발의일자를 작성하는 부분에 아무 근거가 없는 날짜를 기록하는 등 회계문서 기록에 소홀한 사례로 회계담당자는 추후 동 건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회계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 장애인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통보하되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정 촉구공문을 통지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 발송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 도화2·3동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인 ○○○ 등 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재판정 기한내에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 재판정 기한이 최장 4년이 경과했음에도 장애인등급 재판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장애등급의 재판정 미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판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부적정

-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칭과 보행상 장애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하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 도화2·3동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 ○○○ 등 3명에 대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